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폐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1월 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감염예방 및 관리 역활을 강화하고, 다분야 협력에 의한 예방전략 실행을 통해 발생 예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 12. 31. 위·수탁기간 만료 예정임 ○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 도내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 대응인력 역량 강화 - 사업예산 : (2023년) 3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주요내용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관리 전문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행·평가 전반에 대한 교육 등 ○ 이에, 본 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속 추진을 위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 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

나. 회부 일자 : 2023년 8월 29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371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1월 6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 : 김능식 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감염예방 및 관리 역활을 강화하고, 다분야 협력에 의한 예방전략 실행을 통해 발생 예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 12. 31. 위・수탁기간 만료 예정임

○ 이에 본 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속 추진을 위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약칭 : 위탁조례) 제9조제3호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나)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필요성

- 의료관련감염은 장기입원, 휴유증 및 사망, 항생제 내성 증가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항생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 증가 및 의료체계 부담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상승
-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에 따른 감염관리자 역할 및 역량 강화 필요
- 의료관련 감염병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목　적 : 도내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 대응 인력 역량 강화

○ 사업예산 : (’23년) 3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주요내용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관리 전문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행·평가 전반에 대한 교육 등

3. 검토보고의 요지(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이근택)

※ 검토보고서 전문 ----------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서류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별첨 2]

별첨 1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3. 8. 25.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2023. 8. 29.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Ⅰ. 제안이유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감염예방 및 관리 역활을 강화하고, 다분야 협력에 의한 예방전략 실행을 통해 발생 예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 12. 31. 위・수탁기간 만료 예정임

○ 이에 본 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속 추진을 위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약칭 : 위탁조례) 제9조제3호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II.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나.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필요성

- 의료관련감염은 장기입원, 휴유증 및 사망, 항생제 내성 증가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항생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 증가 및 의료체계 부담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상승
-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에 따른 감염관리자 역할 및 역량 강화 필요
- 의료관련 감염병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목　적 : 도내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 대응 인력 역량 강화

○ 사업예산 : (’23년) 3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주요내용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관리 전문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행·평가 전반에 대한 교육 등

- 도내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협력 체계 조성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병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워크숍 개최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체계 및 대응 인력 역량 강화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자료 개발·전파 교육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운영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도내 중소·요양병원 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 이력 관리
- 의료기관(중소·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감염관리 현장 방문단 구성 운영

·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감염관리 방문 교육 자료 개발

·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현장 방문 교육 운영

·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감염관리 서면 자문

라.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2023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Ⅲ. 주요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 검토

○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약칭:위탁조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인 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제4조제2항과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약칭:경기도감염병예방관리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련 대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사업 수행 책무를 부담함.

- 이에 본 동의안의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대상인 바, 적법 절차에 의한 동의안 제출로 검토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과 위탁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대상인 의료관련 감염관리 전문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행·평가 전반에 대한 교육 등 사무는 의료관련 감염 등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는 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타당하다 검토됨

○ 2023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본 동의안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적정'이라고 판단함

○ 2023년 상반기 해당 민간위탁의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각 업무 내용에 따라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은 수준임. 이에 해당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구비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확립으로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됨

〔표 1〕 주요 추진실적

(단위 : 건 / %)

주요 내용	2022년			2023년			
				12월	6월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목표	실적	달성률
종합병원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4	18	450	4	2	3	150
공공의료기관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4	4	100	4	2	3	150
의료기관 감염관리 서면 자문	10	11	110	20	10	11	110
감염관리담당자 교육	2	2	100	3	2	3	150
감염관리 지원 시범 사업 운영	1	1	100	4	2	3	150

※ 출처 :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지원단 성과보고서

다. 위·수탁 계약서(안) 검토

○ 위·수탁 계약서(안)는 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법정 계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계약 내용상 상위법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계약의 체결 등)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 시의 책임 7.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Ⅳ.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의 기본요건을 구비하여 제출된 안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존엄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기에,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목적은 타당하다 사료됨

○ 민간위탁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도지사의 사무 중 특수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가능함. 본 동의안 민간위탁인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의료관련감염병 등 관련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전제 아래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바,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은 해당 사업의 효율성 수단으로 적합하다 검토됨

○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존엄성 및 건강권 보장은 도지사의 중차대한 책무

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그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도민의 존엄성 및 건강권 보장의 기대효과가 있음

<입법조사관> 송희숙
031-8008-7635

4.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일부 발췌

붙임 1 관계 법령 일부 발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별첨 2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54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25일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감염예방 및 관리 역활을 강화하고, 다분야 협력에 의한 예방전략 실행을 통해 발생 예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 12. 31. 위·수탁기간 만료 예정임

나. 이에, 본 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속 추진을 위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필요성

- 의료관련감염은 장기입원, 휴유증 및 사망, 항생제 내성 증가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항생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 증가 및 의료체계 부담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상승
- 감염관리실 설대 확대에 따른 감염관리자 역할 및 역량 강화 필요

- 의료관련 감염병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목　　적 : 도내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 대응 인력 역량 강화

○ 사업예산 : ('23년) 3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주요내용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관리 전문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행·평가 전반에 대한 교육 등

- 도내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협력 체계 조성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병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워크숍 개최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체계 및 대응 인력 역량 강화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자료 개발·전파 교육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운영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도내 중소·요양병원 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 이력 관리
- 의료기관(중소·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감염관리 현장 방문단 구성 운영
  ·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감염관리 방문 교육 자료 개발
  ·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현장 방문 교육 운영
  ·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감염관리 서면 자문

라.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2023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 붙임 1

나. 성과보고서 : 붙임 2
다. 근 거 법 령 : 붙임 3

붙임 1 **사업 계획서**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 (2023. 12. 31.)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필요성

○ 의료관련감염은 장기입원, 후유증 및 사망, 항생제 내성 증가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항생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 증가 및 의료체계 부담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상승

○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에 따른 감염관리자 역할** 및 역량 강화 필요

* 감염관리 인력 지정·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150병상 → 100병상 확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자 역할)에 포괄적으로 규정(감시, 직원교육, 직원의 건강관리 등)

○ 의료관련 감염병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도내 의료관련감염 현황

○ (법정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지정된 다제내성균 6종에 대한 전수감시(CRE, VRSA)·표본(VRE, MRSA, MRPA,MRAB)감기체계 운영

○ 그 중 CRE감염증 발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22년은 '18년 대비 4,819건(▲270.6%)증가)

○ CRE관련 사망자는 **2022년은 2018년 대비 약3배 증가**(30명→1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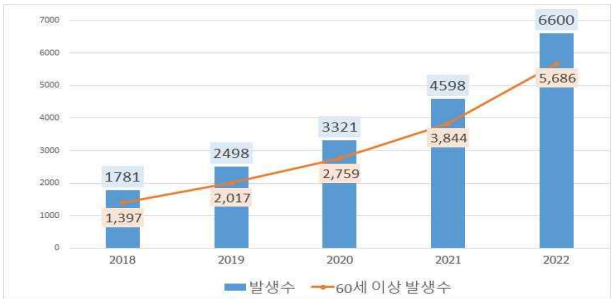

[그림1] 최근 5년간 CRE감염증 발생 현황

[그림2] 최근 5년간 CRE관련 사망자수

○ **고령층에서 CRE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이 고령층이 이용 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이 도내 307개로 전국의 21.4%임**

*2023년 2분기 기준

구분	전국	경기		서울		인천	
상급종합병원	45	5	11.1%	14	31.1%	3	6.7%
종합병원	328	66	20.1%	43	13.1%	18	5.5%
병원	1,398	281	20.1%	233	16.7%	59	4.2%
요양병원	1,435	307	21.4%	117	8.2%	62	4.3%

[표2] 수도권 병원 종합·요양병원 현황

3 추진경과

○ '21년 9월 ·····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21년 10월 ····· 도의회 동의

○ '22.7.29. ~ '22.12.31. ····· 신규계약체결(수탁기관 :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 : 백남종)

○ '22년 12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재계약 적정성 심사)

○ '23.1.1. ~ '23.12.31. ····· 재계약체결(수탁기관 :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 : 송정한)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조의2

○ 목　　적 : 도내 중소·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담당자 의료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사업예산 : 300,000천원(국비 50%, 도비50%)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주요업무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감염관리 전문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행·평가 전반에대한 교육 등

□ 민간위탁 사전 기초조사

○(위탁 필요성)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 및 환류체계 구축으로 내실있는 성과관리와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감염관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관리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수행 필요

○(부서 직접수행 가능성) 의료감염관리 인프라와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설정에 맞는 교육과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감염관리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 직접추진은 비효율적임

○(사업의 중복성 검토) 해당없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 부합

- 용역, 보조사업, 공공기관 고유사무에 미해당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사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운영·평가와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의 실무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음
경제적 효율성	· 부서 직접 추진시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행정비용 증대 등이 예상되며, 민간의 의료관련 감염관리 분야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의료관련 감염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과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며, 도내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전문가 자문위원 구축으로 민간기술 활용 가능성 높음
성과측정 용이성	· 정량적 목표 설정이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이 사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없음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 예정
민간의 시장 여건	· 민간의 시장과 경쟁관계가 없는 건강 안전에 관한 사무로 민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비함

5 '24년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운영 추진계획

□ 운영개요

○ 사 업 량 : 1개(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사업예산 : 총 300백만원(국비50%, 도비50%)

○ 사업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2.31.(1년)

○ 수행조건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마련하여 종사자 보호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그 외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 2024년 주요 추진 계획

계 획	세부 실행계획
1 도내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협력 체계 조성	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병 네트워크 회의 개최(10회) ② 의료관련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 운영(10회) ③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워크숍 개최(1회)
2 감염관리 교육 체계 및 대응 인력 역량 강화	①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자료 개발·전파교육(2회) ②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운영 (집합교육:3회) ③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2회) ④ 도내 중소·요양병원 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 이력 관리(연중)
3 의료기관(중소·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현장 대응 능력 강화	①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감염관리 현장 방문단 구성 운영 ②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감염관리 방문 교육 자료 개발 ③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현장 방문 교육 운영(20회 이상) ④ 병원 특성별 또는 지역별 감염관리 서면 자문 (20건)

□ 소요예산

❍ 3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민간위탁금)

세부항목	예산액(천원)	세부내용	추진방식	
			추진방식	비율(%)
계	300,000			100
인건비 등	134,000	(팀장급) 4,300,000원 ×1명×12개월 (교육전담) 3,500,000원×1명 ×12개월 (컨설팅전담) 3,300,000×1명×12개월	수탁기관 직접추진	44.7
일반운영비	138,000	강좌 컨텐츠 개발비, 강사비, 자문회의비, 사무관리비 등	수탁기관 직접추진	45.0
국내여비	3,000	50,000원× 3명 × 20회	수탁기관 직접추진	1.0
임차료	10,000	의료관련 감염병 컨퍼런스 × 1회	수탁기관 직접추진	3.3
기타운영비	15,000	전체 사업비의 5% 이내	수탁기관 직접추진	5.0

※ 사업내용 및 비목별 예산 소요내역은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 기대효과

❍ 도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의료 종사자의 역량 강화

❍ 도내 상급병원,중소병원,공공의료기관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

6 향후계획

-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23. 8월 4주
-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3. 10월 2주
- ❍ 2024년 사업예산 편성 ····· ’23. 12월 3주
-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4. 1월 2주
- ❍ 계약서 검토(법무담당관) 및 계약 체결 ····· ’24. 1월 4주
-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운영 ····· ’24. 2월 ~

참고1 도내 의료기관 현황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계	8,697	5	66	281	307	50	7,988
수원장안구	164	-	1	3	8	2	150
수원권선구	179	-	1	8	4	1	165
수원팔달구	263	-	3	11	4	1	244
수원영통구	262	1	-	10	4	-	247
성남수정구	250	-	2	6	6	1	235
성남중원구	162	-	1	2	3	-	156
성남분당구	527	1	3	9	6	-	508
의정부시	327	-	5	13	8	4	297
안양만안구	146	1	2	3	7	-	134
안양동안구	283	1	-	10	-	1	271
부천시	598	-	5	20	21	5	546
광명시	236	-	2	4	5	-	225
평택시	316	-	4	11	10	-	291
동두천시	51	-	-	1	7	1	42
안산상록구	140	-	2	5	7	2	124
안산단원구	263	1	2	12	10	1	237
고양덕양구	301	-	1	9	8	3	280
고양일산동구	207	-	4	9	17	3	174
고양일산서구	205	-	1	6	5	-	193
과천시	47	-	-	-	-	-	47
구리시	171	-	1	8	4	1	157
남양주시	402	-	2	15	16	4	365
오산시	117	-	2	8	5	-	102
시흥시	309	-	3	8	12	-	286
군포시	153	-	2	3	5	1	142
의왕시	77	-	-	1	4	2	70
하남시	240	-	-	7	6	-	227
용인처인구	114	-	2	5	6	1	100
용인기흥구	247	-	2	6	11	2	226
용인수지구	223	-	-	4	4	-	215
파주시	242	-	2	13	20	1	206
이천시	125	-	1	4	6	1	113
안성시	96	-	2	2	8	1	83
김포시	275	-	2	15	6	3	249
화성시	460	-	3	14	11	3	429
광주시	161	-	1	2	6	-	152
양주시	123	-	-	6	14	1	102
포천시	71	-	2	2	4	1	62
여주시	60	-	-	2	5	2	51
연천군	14	-	-	-	1	-	13
가평군	33	-	-	2	5	1	25
양평군	57	-	-	2	8	-	47

참고2 도내 시 · 군 CRE 신고현황(2018-2022)

신고건수(%)

	2018	2019	2020	2021	2022
가평군	1(0.1)	3(0.1)	11(0.3)	4(0.1)	7(0.1)
고양시 덕양구	79(4.4)	92(3.7)	126(3.8)	167(3.6)	285(4.3)
고양시 일산동구	116(6.5)	169(6.8)	258(7.8)	265(5.8)	316(4.8)
고양시 일산서구	44(2.5)	68(2.7)	103(3.1)	94(2)	149(2.3)
과천시	0(0)	0(0)	0(0)	0(0)	0(0)
광명시	43(2.4)	31(1.2)	42(1.3)	27(0.6)	51(0.8)
광주시	23(1.3)	41(1.6)	23(0.7)	22(0.5)	44(0.7)
구리시	47(2.6)	64(2.6)	61(1.8)	109(2.4)	128(1.9)
군포시	55(3.1)	110(4.4)	102(3.1)	100(2.2)	112(1.7)
김포시	100(5.6)	66(2.6)	130(3.9)	190(4.1)	302(4.6)
남양주시	56(3.1)	64(2.6)	122(3.7)	339(7.4)	436(6.6)
동두천시	8(0.4)	4(0.2)	5(0.2)	4(0.1)	9(0.1)
성남시 분당구	134(7.5)	113(4.5)	145(4.4)	194(4.2)	256(3.9)
성남시 수정구	5(0.3)	5(0.2)	16(0.5)	75(1.6)	99(1.5)
성남시 중원구	3(0.2)	4(0.2)	2(0.1)	5(0.1)	19(0.3)
수원시 권선구	7(0.4)	10(0.4)	16(0.5)	16(0.3)	55(0.8)
수원시 영통구	37(2.1)	69(2.8)	106(3.2)	103(2.2)	128(1.9)
수원시 장안구	15(0.8)	28(1.1)	17(0.5)	122(2.7)	204(3.1)
수원시 팔달구	140(7.9)	105(4.2)	159(4.8)	167(3.6)	269(4.1)
시흥시	12(0.7)	39(1.6)	67(2)	163(3.5)	183(2.8)
안산시 단원구	56(3.1)	131(5.2)	225(6.8)	197(4.3)	252(3.8)
안산시 상록구	7(0.4)	40(1.6)	86(2.6)	82(1.8)	52(0.8)
안성시	10(0.6)	25(1)	12(0.4)	2(0)	41(0.6)
안양시 동안구	240(13.5)	242(9.7)	175(5.3)	255(5.5)	402(6.1)
안양시 만안구	59(3.3)	72(2.9)	77(2.3)	96(2.1)	106(1.6)
양주시	3(0.2)	18(0.7)	24(0.7)	37(0.8)	36(0.5)
양평군	3(0.2)	3(0.1)	1(0)	13(0.3)	14(0.2)
여주시	15(0.8)	27(1.1)	28(0.8)	14(0.3)	26(0.4)
연천군	1(0.1)	0(0)	2(0.1)	6(0.1)	10(0.2)
오산시	15(0.8)	6(0.2)	14(0.4)	99(2.2)	191(2.9)
용인시 기흥구	18(1)	39(1.6)	65(2)	102(2.2)	183(2.8)
용인시 수지구	1(0.1)	12(0.5)	7(0.2)	9(0.2)	10(0.2)
용인시 처인구	11(0.6)	8(0.3)	18(0.5)	14(0.3)	59(0.9)
의왕시	2(0.1)	4(0.2)	7(0.2)	6(0.1)	10(0.2)
의정부시	150(8.4)	280(11.2)	346(10.4)	419(9.1)	567(8.6)
이천시	5(0.3)	1(0)	3(0.1)	0(0)	4(0.1)
파주시	6(0.3)	11(0.4)	20(0.6)	42(0.9)	67(1)
평택시	41(2.3)	80(3.2)	84(2.5)	88(1.9)	220(3.3)
포천시	4(0.2)	7(0.3)	19(0.6)	18(0.4)	59(0.9)
하남시	1(0.1)	1(0)	4(0.1)	5(0.1)	9(0.1)
화성시	72(4)	108(4.3)	92(2.8)	158(3.4)	269(4.1)
부천시	136(7.6)	298(11.9)	498(15.0)	769(16.7)	961(14.6)
총계	1,781(100.0)	2,498(100.0)	3,318(100.0)	4,597(100.0)	6,600(100.0)

붙임 2 성과보고서(약식)

□ 개 요

○ 위탁사무명 :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수탁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위탁비용 : 3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성과목표

○ 도내 의료관련 감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 대응 인력 역량 강화
- 상급·종합·공공의료기관 감염병 네크워크 구축 및 감염관리 인력 교육 훈련

□ 추진실적

주요 내용	2023년(12월기준)	2023년(6월 기준)			비고
	목표	목표	실적	달성률	
종합병원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4	2	3	150	하반기 지속 운영
공공의료기관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4	2	3	150	하반기 지속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서면 자문	20	10	11	110	하반기 지속 운영
감염관리담당자 교육	3	2	3	150	하반기 지속 운영
감염관리 지원 시범 사업 운영	4	2	3	150	하반기 지속 운영

○ 목표달성 가능여부(위탁기간 만료시) : **가능** (○)

□ 평가의견

○ 도내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수행 및 운영
- 경기 북부와 남부,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관련 감염병 전문가의 인프라 구축과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

○ 현 수탁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공공적 기능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격리병상 운영 등 도내 감염병 대응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도내 중소병원, 요양병원 의료과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합함

□ 개선과제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